

2. 흡입독성시험이 없다고 계속 입장을 내왔던 입장(이주환 의원실 및 jtbc 녹취 확보)인데, 2021년 흡입독성시험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?

- 1번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, 방역용 소독제(현재 승인 대상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)의 흡입독성시험자료는 기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되었음을 설명드린 것임
- '21년 수행된 흡입독성시험은 강화된 살생물제 승인제도에 따라 '24년 예정된 '살생물제품'의 원활한 평가·승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 유통중인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평가방법*을 사전에 연구·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함
 - *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분류·표시 방법의 적용, 면제조건 적용성 등 검토
- 강화된 살생물제 승인제도는 EU의 BPR제도를 모델로 국내에 도입된 제도로 살생물제를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유해성·위해성 정보, 효능·효과 정보 등을 제출하여 환경부(국립환경과학원)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, 처음으로 평가·승인하게 될 '24년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해성 분류·표시 규정의 적용, 면제조건 적용성 등 유해성 평가방법을 실제 유통중인 제품을 토대로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었음